경제혁신

산업통상자원부 MINISTRY OF TRADE, INDUSTRY & ENERGY

보 도 자 료

희망의 대한민국

http://www.motie.go.kr

2016년 3월 15일(화)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방송.통신 3월 14일(월) 오전 11시 보도 가능)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창의산업정책과 과장 황수성(044-203-4360), 전수하 사무관(4363)

국민안전을 책임질 우수한 제품 · 서비스를 찾는다

- 2016년도 국민안전증진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선정 계획 공고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는 국민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안전제품·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한 2016년 **'국민안전증진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선정계획을 3.15일(화) 공고**했다.

○ 이번 공고에 따른 과제 **접수기간은 3.15 ~ 4.15일**까지이며, 2단계 평가를 통해 7월말까지 **총 8개 과제(예산 : 총 28억원)를 선정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 국민안전증진기술개발사업은 최근 정부의 안전산업 육성 정책기조*에 따라 **국민안전을 확보함과 동시에 관련 중소·중소중견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 정부는 안전산업 육성을 위한 「안전산업 활성화 방안('15.3월, 제7차 무역투자진흥회의)」을 마련·추진 중임

○ 금년도 신규과제는 국민생활*과 공공사회** 분야의 안전기술을 대상으로 시장 중심의 사업화가 가능한 제품·서비스를 우선으로 **품목지정***과 자유공모 형식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 가정 및 학교생활 안전기술, 산업현장 안전기술, 레저 및 외부활동 안전기술

** 범죄예방 기술, 소방안전 기술, 해양·육상 안전 및 구조·조난 기술

*** 지정공모와 자유공모의 중간 형태로서 필요기술의 구체적 스펙(RFP) 제시 없이 품목(제품, 제품군)만 제시하는 공모 방식

□ 산업부는 이번 공고와 관련하여 기업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며

* 일시/장소 : **'16. 3. 17.(목) 14:00~17:00, 대한상의**(서울시 중구 소재)

○ 상세한 신청요건과 지원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www.motie.go.kr) **및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www.keit.re.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붙임) 2016년도 국민편익증진기술개발사업 공고문

OPEN 공공정보 공공자원 활용하여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창의산업정책과 황수성 과장(☎ 044-203-4360), 전수하 사무관(☎ 044-203-436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MOTIE
ISTRY OF
DE, INDUSTRY & ENERGY

최미화 / 홍보담당관 / 2016-03-14 13:31:34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16 - 118호

2016년도 국민안전증진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2016년도 국민안전증진기술개발사업의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기술개발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3월 1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목 차

1. 사업개요
1-1. 사업목적
1-2. 지원대상분야
1-3. 사업비 지원 규모 및 기간
2. 사업추진체계
3. 사업비 지원기준 및 기술료 징수기준
3-1. 사업비 지원기준
3-2. 기술료 징수 여부 및 방법
3-3. 사업비 산정시 유의사항
4. 지원분야 및 신청자격 등
4-1. 지원분야
4-2. 신청자격
4-3. 지원제외 처리기준
4-4. 과제 중복성 제기
5. 평가 절차 및 기준
5-1. 평가절차
5-2. 평가기준(우대 및 감점기준 포함)
6. 근거법령 및 규정
7. 신청방법, 제출기한 및 접수처
8. 제출 서류 사항
9. 기타 유의 사항
10. 문의처 등

1. 사업개요

1-1. 사업목적

○ 국민 전체가 체감할 수 있으며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안전제품 개발 및 국가 안전 서비스 고도화를 통해 국민안전을 확보하고, 관련 중소·중견기업 육성으로 안전산업의 활성화 추진

1-2. 지원대상분야

○ (공공사회 안전기술) 국민의 생명을 직접적으로 보호해주는 안전 서비스를 고도화함으로써 국민안전을 직·간접적으로 확보
* ①범죄예방 기술, ②소방안전 기술, ③해양안전 및 구조·조난 기술

○ (국민생활안전기술) 국민의 일상생활 또는 근접한 거리에서 경험할 수 있는 위험 및 위해요소들을 사전에 제거하거나 상황 발생 시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품 및 서비스의 개발
* ①가정·학교 안전기술, ②산업현장 안전기술, ③레저 등 외부활동 안전기술

※ 지원분야를 기존 사회약자배려 및 사회이슈 해결에서 국민 안전제품·기술 개발로 변경
(사업명 변경: 국민안전증진기술개발사업(舊. 국민편익증진기술개발사업)

1-3. 지원규모 및 기간

○ 2016년 신규지원 예산 : **28.2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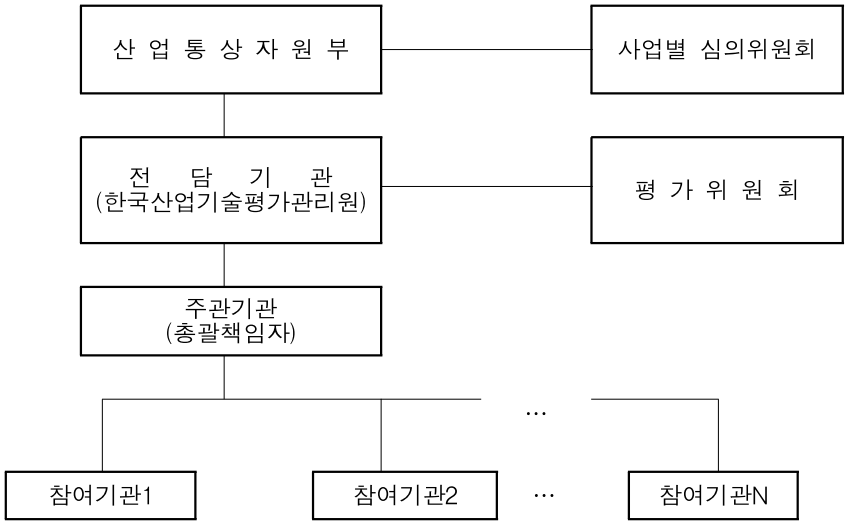
○ 지원형태 :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매칭
* 수행기관은 총사업비에서 정부출연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민간부담금(현금+현물) 매칭 부담

○ 지원방식 : 품목지정(품목), 자유공모(자유)
* TRL 5~8단계의 혁신제품형 과제 지원
* 자유공모과제는 ①가정·학교 안전기술, ②산업현장 안전기술, ③레저 등 외부활동 안전기술 등 국민생활 안전에 관련된 제품과 서비스 기술에 대하여 지원

○ 지원기간 및 금액 : 3년 이내, 정부출연금 최대 5억원/년 이내
* 자유공모의 경우 한정된 예산 및 제안 예산 규모에 따라 3개 내외 과제 선정 (2~4억원 이내/과제당)
* 과제별 지원기간 및 금액은 상이함에 따라 과제제안요구서(RFP)를 참조할 것
* 과제별로 신청가능한 정부출연금의 최대범위는 과제제안요구서에 제안된 지원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 본사업의 요구수준에 맞지 않는 경우, 제한된 예산 등으로 지원되지 않을 수 있으며 과제별 제안요구서(RFP) 내용의 사업비 및 개발기간은 평가위원회에서 조정 가능함

최미화 / 홍보담당관 / 2016-03-14 13:31:34

2. 사업추진체계



3. 사업비 지원기준 및 기술료 징수기준

3-1. 사업비 지원기준

□ 정부출연금 지원 및 민간부담금 부담 조건

① 과제 사업비 구성

○ 과제의 사업비는 정부출연금과 민간부담금(현금 및 현물)으로 구성

○ 과제에 참여하는 자는 정부출연금을 배분 받아 과제를 수행하여야 하며, 영리기관의 경우 민간부담금 중 현금을 개별 부담하여야 함

② 정부출연금 지원 및 민간부담금 중 현금 부담 비율

○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이 수행기관 유형 및 과제 유형에 따라 차등 지원

수행기관[1] 유형	정부출연금 지원 비율
대기업[2]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33% 이하
중견기업[3]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50% 이하
중소기업[4]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67% 이하
그 외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100% 이하

1) '수행기관'이란 과제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임
2) '대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3항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임
3)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1호의 기업임
4)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임

○ 수행기관에서 부담하여야할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음

수행기관 유형	민간부담금 현금 비율
대기업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60.0% 이상
중견기업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50.0% 이상
중소기업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40.0% 이상
그 외	필요시 부담

○ 수행기관 중 중소·중견기업에 정부출연금의 60% 이상을 배분하여야 함

○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는 위 표에서 '그 외'를 적용함

3-2. 기술료 징수 여부 및 방법

○ 기술료 징수 대상

- 과제 종료(조기종료 포함) 후 평가결과 "혁신성과", "보통", "성실수행"인 과제의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에게 성과물에 대한 실시권과 관련하여 기술료 징수

*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은 사용한 정부출연금에 대해서만 기술료 납부

○ 기관유형(비영리/영리)별 기술료 징수 방식

- 영리기관은 과제 종료 후 정액기술료 방식과 경상기술료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기술료를 전담기관에 납부

*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에 따름.

○ 영리기관의 기술료

- **(정액기술료)** 실시기업은 아래의 정액기술료를 5년 이내의 기간에 1년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납부하여야 함

최미화 / 홍보담당관 / 2016-03-14 13:31:34

실시기업 유형	정액기술료
대기업	정부출연금의 40%
중견기업	정부출연금의 20%
중소기업	정부출연금의 10%

- **(경상기술료)** 실시기업은 아래의 착수기본료 및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매출액에 대하여 매출 발생 회계연도부터 5년 또는 과제종료 후 7년 중에서 먼저 도래한 시점까지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납부하여야 함

실시기업 유형	착수기본료1)	경상기술료
대기업	정부출연금의 4%	매출액의 4%
중견기업	정부출연금의 2%	매출액의 2%
중소기업	정부출연금의 1%	매출액의 1%

1) '착수기본료'는 기술료 확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함
2) 경상기술료의 누적 징수액 최대 납부한도는 중소기업인 경우 정부출연금 대비 100분의 12, 중견기업의 경우 100분의 24, 대기업의 경우 100분의 48이내 임
3) 관련 매출을 허위로 보고한 경우 경상기술료의 누적 징수액 납부한도는 중소기업인 경우 정부출연금 대비 100분의 24, 중견기업의 경우 100분의 48, 대기업의 경우 100분의 96으로 가산함

- **(기술료 감경)** 실시기업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고 "혁신성과"로 평가된 과제에 대해서는 해당 실시기업이 납부할 기술료의 30%를 감경 가능하고, 실시기업은 감경받은 기술료를 참여연구원에 대한 전시회 견학, 연수, 교육 등 인센티브 재원으로 사용하여야 함

○ 비영리기관의 기술료
- 비영리기관의 기술료의 징수 및 관리는「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제4조 및 제17조에 따름

3-3. 사업비 산정시 유의사항

□ 산업기술 R&D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 확대를 위해 최소(의무) 편성 인건비 비중은 아래와 같음

구분	국민안전중진기술개발사업
인건비 비중	1차년도 총사업비중 인건비(현금+현물)를 최소(의무) 55%로 책정

※ 인건비 비중은 사업계획서내의 1차년도 비목별 총괄표 중 인건비와 학생인건비 합(현금+현물)의 비중을 의미함

□ 영리기관 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는 현물계상이 원칙이나 다음 기준에 따라 현금으로 산정 가능

○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 신규채용 연구원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15년 9월 15일 이후)부터** 과제 종료 시까지 채용한 신규인력임
- 중소·중견기업 신규채용 연구원의 인건비 현금 산정은 채용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하며, 이때 인건비 현금 집행은 과제 시작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
- 과제선정 후 신규 채용인력의 현금 인건비를 원래 계획보다 감액할 경우 해당금액을 반납하여야 하며, 당초 계획대로 신규인력을 채용하지 못하여 집행하지 않은 금액은 협약종료 후 반납하여야 함

○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상기에 의거 채용한 **신규 참여연구원 인건비 금액만큼 기존 인력 인건비를 협약시에 한하여 현금 산정**할 수 있음
- 단, 신규 채용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미 집행액 만큼 기존인력의 현금인건비 집행금액 불인정

○ 창업초기 중소기업(사업개시일로부터 협약기간 시작일까지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기존인력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음

○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별표 제1호*의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의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중견기업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 공통운영요령 [별표1]의 기술분류체계의 대분류가 지식서비스 분야인 경우와 소분류가 S/W 및 설계기술 등에 해당하는 경우
- 단, 인건비 현금 인정분야로 신청된 경우라 하더라도 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지 않는 경우 현금으로 산정할 수 없음

○ 기술력 제고를 위해 정부출연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및 대학부설연구소(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또는 대학의 직제규정에 있는 연구소만 해당)에 파견되어 과제에 참여하는 중소기업 소속 참여연구원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국연구개발서비스협회 인증)된 기업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최미화 / 홍보담당관 / 2016-03-14 13:31:34

○ 육아부담으로 시간선택제(통상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으로 주당 15~35시간 범위에서 정한 시간을 근무하는 것)로 근무하는 중소·중견기업 소속 여성연구원의 인건비
- 단, 상기 현금인건비 산정 내용과 중복적용하지 아니함

□ 중소·중견기업 대상 연구지원전문가 지원제도

○ 중소·중견기업에서 과제 지원을 위해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 실시하는 소정의 연구지원전문가 교육을 수료할 경우, 1명에 한해 사업비 중 간접비에서 해당 인력의 인건비를 현금 산정할 수 있음
- 신규채용인력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15년 9월 15일 이후)부터** 채용한 경우에 인정됨
- 기존인력은 해당인력 인건비의 50%까지 현금으로 산정 가능(타 과제 포함 참여율이 50%를 초과할 수 없음)

□ 연구실 안전관리비 산정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간접비 내에 연구실 안전관리비를 직접비 중 인건비와 학생인건비 합계의 1%이상 2%이하로 책정하여야 함

4. 지원과제 및 신청자격 등

4-1. 지원과제

□ 지원과제 및 유형목록

순번	과제명	금액(억원)/기간(금액/'16)	TRL	분야	연계	주관기관
품목-1	포터블 광학식 음주측정기 개발	8/2 (4)	[5~8]	공공안전(경찰)	시범운영	중소·중견
품목-2	영상조작 검출 프로그램 개발	8/2 (4)	[5~8]	공공안전(경찰)	시범운영	중소·중견
품목-3	영상 빅데이터기반 기계학습을 통한 스마트 범죄예방 솔루션 개발	9/2 (4.5)	[5~7]	국민안전(학교, 외부)	시범운영	중소·중견
품목-4	에너지산업을 위한 재난안전 대비 현장훈련 시스템 개발	9/2 (4.5)	[5~8]	국민안전(산업)	시범운영	중소·중견
품목-5	자연재해 대비 유독가스 흡착용 마스크 필터 및 마스크 제품화 기술 개발	5/2 (2.5)	[5~8]	국민안전 (가정,학교외부)	시범운영	중소·중견
자유-1	자유공모	16/2 (8.7)	-	국민안전 (가정,학교)	-	중소·중견
자유-2	자유공모			국민안전 (레저)	-	중소·중견
자유-3	자유공모			국민안전 (산업)	-	중소·중견

* 지원대상 과제별 과제제안요구서(RFP)는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또는 (www.keit.re.kr) 참조
* 과제제안요구서(RFP) 내용의 개발사업비 및 개발기간은 평가위원회에서 조정 가능함
* 공고된 과제는 평가결과에 따라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MOTIE
ISTRY OF TRADE, INDUSTRY & ENERGY

최미화 / 홍보담당관 / 2016-03-14 13:31:34

4-2. 신청자격

◇ 품목지정 및 자유공모의 경우 산업기술 R&D제도 혁신방안('14.6)에 따른 **R&D 프로세스 개편에 따라 신청자격, 평가절차, 평가기준, 신청서 제출기한 등을 세분화 하여 적용**

① 개념계획서 평가(개념계획서 접수 및 평가)→ ② 사전 서면검토(사업계획서 접수 및 서면검토)→ ③ 사업계획서 평가 順

◇ **계획서는 개념계획서, 사업계획서로 구성**

◇ **개념계획서 평가를 통해 "사업계획서 제출대상"으로 선정된 과제에 한하여 사업계획서 제출 가능**

① 개념계획서

◇ **(개요) 제안된 연구과제에 대해 연구자가 수행하고자 하는 연구의 특성, 중요성, 방법론 등 아이디어를 간략하게 정리한 예비 계획서**

◇ **(서식) 공고시 첨부양식 참조**(전담기관 홈페이지)

* 평가자의 이해제고를 위해 표, 그림, 차트 등의 도식적 작성 및 자료의 객관성 확보를 위한 정량적 수치 등의 사용을 권고
* 표지와 제안기관 정보 기입 부분을 제외하고 연구자를 직·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표현[1]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평가에서 배제함

◇ **(분량) 총 5페이지 이내[2](표지, 제안기관 정보는 제외), 공통항목별 1~1.5페이지 내외**

◇ **(개념계획서 평가) 제안자의 발표(면접)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개념계획서를 토대로 개념계획서 서면평가를 통해 "사업계획서 제출대상" 선정**

1) 기관명, 명칭 등 신청 주관기관 및 향후 수행기관(참여기관 등)의 언급이 필요한 경우 "A기업", "B대학교", "C연구원" 등으로 작성하되, **직·간접적으로 드러나는 표현(회사 로고, 연구자 이름 등)을 할 경우 평가에서 배제**

2) 페이지를 초과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주관기관

○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 중견기업의 경우, 아래의 '중견기업육성지원센터'의 중견기업확인서를 발급받아 신청 시 제출하여야 함

※ 중견기업확인(약 2주 소요) : 한국산업기술진흥원(www.kiat.or.kr)

② 사업계획서

◇ **(개요) 선정된 개념계획서(주관기관)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서**

◇ **(서식) 공고시 첨부양식 참조**(전담기관 홈페이지)

◇ **(온라인 과제발굴 플랫폼) 개념계획서 평가를 통과한 주관기관은 필요시 "온라인 과제발굴 플랫폼(산업기술지원 사이트, itech.keit.re.kr)"을 활용하여 참여기관 등 컨소시엄을 구성할 수 있음**

* 주관기관은 개념계획서 신청시, 참여기관을 공개적으로 찾고자 할 경우 개념계획서 '공개'를 선택하여 주관기관의 기본정보(과제명, 주관기관명, 연구 책임자)를 공개할 수 있음
* 개념계획서 공개는 개념계획서 평가결과 통보일로부터 사업계획서 접수 마감시까지 공개

◇ **(사업계획서 제출) 개념계획서 '미공개' 주관기관은 자율적으로, '공개' 주관기관은 참여희망 기관 중 사업수행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기관 등을 선택하여 컨소시엄 구성 및 사업계획서 제출**

□ 참여기관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협회, 병원 및 기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혁신개발사업의 실시기관으로 하며, 외국 소재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 참여기관으로 사업 참여 가능함

1-3. 지원 제외 처리기준

□ 아래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수행기관, 수행기관의 장, 총괄책임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에 대하여는 비적용)

- 기업의 부도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함)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함)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

최미화 / 홍보담당관 / 2016-03-14 13:31:34

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

- 사업개시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로 함). 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3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함

 ※ 부채비율 계산시 벤쳐캐피탈협회 회원사로부터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 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동시 수행 과제수가 접수마감일 현재 아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단,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0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과제는 예외로 함)

구분	중소기업	중견기업
동시수행 과제수	3개	5개

○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과제 이력 누적수

- 비영리기관의 경우

·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가 접수마감일 기준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책임자로 수행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판정을 2회 받은 후 3년 이내(마지막 "성실수행"(조기종료 포함) 과제의 평가결과 확정일 기준)인 경우 사전지원제외로 처리함

- 영리기관의 경우

·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가 접수마감일 기준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책임자로 수행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판정을 2회 받은 후 3년 이내(마지막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과제의 평가결과 확정일 기준)인 경우 사전지원제외로 처리함

· 신청과제의 수행기관이 접수마감일 기준 주관기관으로 수행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판정을 3회 받은 후 1년 이내(마지막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과제의 평가결과 확정일 기준)인 경우 사전지원제외로 처리함

※ '16년 공고 이후 신규 수행과제가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으로 평가결과를

확정 받는 경우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과제 이력 누적수로 판정

○ 품목지정 과제의 경우, 신청과제가 공고된 분야별 품목에 부합되지 않은 경우

○ 자유공모의 경우, 신청과제가 해당사업의 기본목적과 부합되지 않은 경우

○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과제와 비교하여 판단요소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

○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산업기술 R&D 인적자본 투자 확대를 위한 최소(의무) 편성 인건비 비중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 수행기관 중 중소·중견기업에 정부출연금의 60% 이상을 배분하지 않은 경우

○ 사업계획서 및 제출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 접수마감일 기준 제출서류 미비 시 지원제외 될 수 있음

4-4. 과제 중복성 제기

○ 지원 대상 과제가 정부에 의해 기 지원·기 개발되었거나 민간에 의해 기 개발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중복성을 제기할 수 있음

※ 정부에 의한 기 지원·기 개발 여부 확인 방법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자료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 (www.keit.re.kr) "자료→지원과제검색"
- 타기관 공개자료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의 "사업과제 → 세부과제→세부과제검색"

○ 제기기간 : 2016. 3. 15(화) ~ 2016. 3. 31(목)

○ 제 기 처 : (41069)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8길 32(신서동 1152)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사업총괄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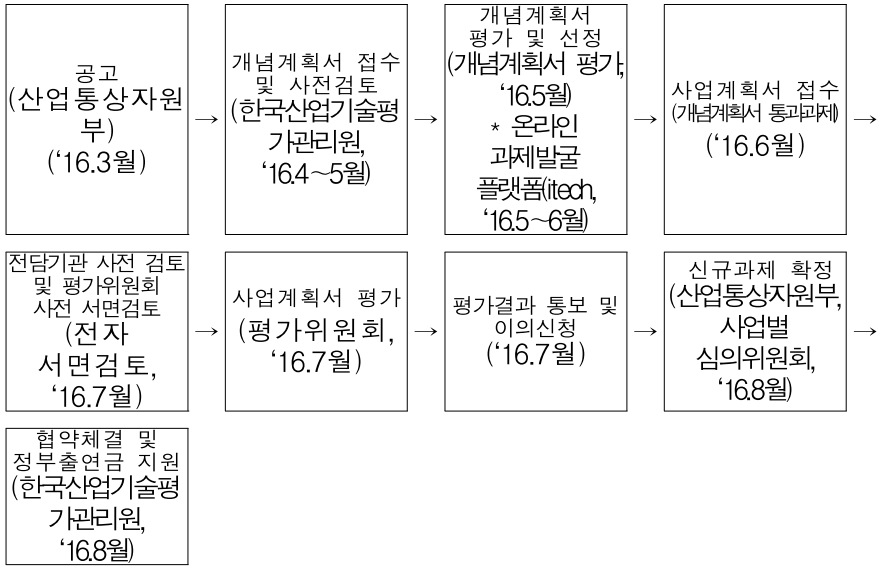
○ 제기방법 : 제기기관 대표자 명의의 공문 제출(관련 근거자료 첨부)

최미화 / 홍보담당관 / 2016-03-14 13:31:34

5. 평가절차 및 기준

5-1. 평가절차

□ 평가절차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사전검토 : 제출서류, 신청자격 등 검토
- 이의신청 : 평가위원회에서 선정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1회에 한하여 할 수 있음
- 사업별 심의위원회 : 평가결과 조정·심의

※ 사업별 심의위원회는 접수된 과제수 및 평가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생략 가능

○ 과제별로 신청가능한 정부출연금의 최대범위는 품목별로 명기된 지원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 과제 수행기간 중 정부의 정책, 예산 또는 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 등에 따라 연차별 정부출연금은 변경될 수 있음

5-2. 평가기준

□ 평가항목

① 개념계획서 평가항목

○ 목표 및 필요성(30), 기술특성(20), 개발전략(30), 기대성과(20)

평가항목	세부 항목
목표 및 필요성 (30)	• 기술개발목표와 내용(10) : 목표도전성, 구성적절성 • 기술개발 필요성(20) : 지원타당성, 분야적절성, 개발당위성, 시장부합성
기술특성 (20)	• 혁신성(10) : 기술적 혁신성 • 차별성(10) : 기존기술 및 유사기술과의 차별성
개발전략 (30)	• 기술개발방법(10) : 개발방법의 적합성 및 목표 달성가능성 • 위험극복방법(10) : 위험극복전략의 타당성 • 연구역량(10) : 제안기관의 연구 인프라 및 역량
기대성과 (20)	• 사업화계획(10) : 사업화효과 • 파급효과(10) : 기술, 경제, 사회적 파급효과

○ 사업계획서 제출 대상 과제 : 개념계획서별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 "사업계획서 제출 대상"으로 하며 70점 미만인 경우 "사업계획서 제출 비대상"**으로 한다. 단, 70점 이상인 경우가 다수일 경우 품목 또는 지원분야별로 지원규모를 고려하여 최고득점 순으로 **최대 3개 까지 "사업계획서 제출 대상"으로 결정함.** 또한, 개념계획서가 **3개 미만**으로 접수된 경우에는 **개념계획서 평가를 생략**하고 사업계획서와 신규평가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토록 할 수 있음

○ "사업계획서 제출 대상"인 신청기관의 장은 사업계획서 제출을 통보받은 날 부터 **사업계획서 제출 마감일('16. 5. 11(수) ~ 6. 9(목) 18:00까지)** 이내에 사업계획서를 포함하여 신규평가에 필요한 서류를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개념계획서 평가결과 통보일에 따라 사업계획서 제출일이 변동될 수 있음

② 사업계획서 평가항목

최미화 / 홍보담당관 / 2016-03-14 13:31:34

평가항목	세부 항목
기술성 및 개발능력 (40)	• 기술개발목표와 내용(10) : 목표도전성, 구체성, 명확성, 타당성 • 혁신성 및 차별성(10) : 기술·제품의 혁신성 및 차별성 • 개발능력(10) : 연구수행자(기관)의 개발능력 및 적절성 • 추진전략 및 체계(10) : 기술개발 추진전략 및 체계의 적절성, 수요자 연계 가능성
경제성 및 사업화가능성 (30)	• 실용화 가능성(10) : 기술·제품의 인증 및 실용화 가능성 • 파급효과(10) : 사업화계획의 적정성 및 시장 파급 효과 • 보급 및 판매가능성(10) : 제품생산을 통한 보급 및 판매가능성
사회가치성 (30)	• 기여도 및 해결효과(10) : 국민 삶의 질 향상 기여 및 사회적 이슈 해결 효과 • 문제해결 및 맞춤형 기술·제품 개발가능성(10) : 시장 공급이 어려운 분야의 문제 해결 및 맞춤형 기술·제품 개발 가능 여부 • 접근용이성 및 만족도(10) : 수요자 접근 용이성 및 만족도 증대 가능성

○ 지원대상 과제 : 신청과제의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가능과제"로 하며**, 종합평점이 **7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함.** 단, 70점 이상인 과제의 경우에도 해당 분야의 예산 범위가 초과한 경우에는 평가점수가 높은 순위에 따라 우선 지원되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음

○ 과제별로 신청가능한 정부출연금의 최대범위는 품목별로 명기된 지원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 공고된 과제는 평가결과에 따라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선정된 과제는 **사업비(연구비) 및 개발기간이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 규정에 따라 연차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될 수 있음

○ 과제 수행기간 중 정부의 정책, 예산 또는 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 등에 따라 연차별 정부출연금은 변경될 수 있음

□ 아래의 경우 평가 시 우대함

○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기술개발사업 과제를 수행한 결과 "혁신성과"("조기종료(혁신성과)" 포함) 판정을 받은 총괄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2점)

○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여성가족부에서 부여하는 '가족친화인증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2점)

○ 과제에 참여하는 여성연구원이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① 총괄책임자가 여성인 경우(5점)

② 참여연구원중 여성연구원이 20% 이상인 경우(5점)

③ 주관기관의 참여연구원 중 여성참여연구원이 20% 이상인 경우(3점)

* 여성연구원이 참여하는 경우 가점기준을 모두 충족할 경우에도 5점을 초과할 수 없음

* 여성연구원 관련 가점을 받은 경우 총수행기간 동안 이를 유지하여야 함

○ 주관기관이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 다음의 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3점)

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상생협력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경우(임직원이 선정 된 경우 혹은 선정 당시 소속된 기업 포함)

② 동반성장위원회가 발표하는 동반성장지수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경우

③ 대·중소기업협력재단으로부터 '성과공유제 도입기업 확인'을 받은 경우

④ 해당 과제에 대해 성과공유 사전계약을 체결하여 대·중소기업협력재단에 등록한 경우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40조에 따른 성과활용평가를 통해 우수과제로 평가된 수행기관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2점)

○ 신청 과제의 총괄책임자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기술개발사업 수행의 결과로 다음의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2점)

①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동일 과제를 수행한 수행기관 이외의 기관(기업)과 기술실시 계약을 체결하여 징수한 기술료 총액이 2천만원 이상인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인 경우

②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동일 과제를 수행한 수행기관 이외의 기관(기업) 나 [illegible] 이상의 기술이전 실적이 있는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인 경우

○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우수한 연구성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이달의 산업기술상" 포상을 받은 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2점)

* 장관상 수상자에 한하며, 전담기관장 수상자는 가점 부여 대상이 아님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녹색인증을 받은 기업이 해당기술 관련하여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접수 마감일 기준 인증서가 유효한 경우에 한함)(2점)

○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받은 신기술(NET), 신제품(NEP), 신뢰성(R)인증, 우수디자인상품(GD)을 보유한 기업이 당해 기술과 관련하여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2점)

○ 수요기관으로부터 구매의향서(별첨 양식)를 제출한 경우(5점)

※ 평가위원회 평가 시 상기 가점기준에 따라 가점을 합산하되, 총 10점을 초과할 수 없음

□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평가 시 감점함

○ 산업부 소관 사업의 평가결과가 중단(불성실)" 또는 "불성실수행" 과제의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가 신청하는 경우 최종평가 결과 확정 후 2년 이내일 경우(3점)

○ 산업부 소관 사업에 대하여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과제 선정 후 또는 과제 수행

최미화 / 홍보담당관 / 2016-03-14 13:31:34

도중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을 포기한 경력이 있는 총괄책임자 또는 수행기관인 경우(3점)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40조에 따른 성과활용평가 결과 최하위 등급을 받은 과제의 수행기관, 총괄책임자, 참여기관 책임자가 신청하는 경우 성과활용평가 결과 통보 후 3년 이내인 경우(3점)

* 본 감점사항은 2016년 최종평가 대상 과제의 성과활용평가 결과부터 반영함

○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에 상습적으로 위반한 기업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할 때, 그러한 위반 사실이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통보 등을 통하여 확인될 경우(2점)

※ 최종 점수 산출 시 상기 감점 기준에 따라 감점을 제하되, 총 5점을 초과하여 감점할 수 없음

6. 근거법령 및 규정

☐ **근거법령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 **관련규정**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의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 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 지침」

7. 신청방법, 신청서 제출기한 및 접수처

☐ **신청방법 및 제출기한**

구분	① 개념계획서	② 사업계획서
☐ **신청방법**	○ 공고기간 : 2016.3.15(화) ~ 4.14(목)까지 31일	(개념계획서 평가 통과 과제)
☐ **신청서 및 관련양식 교부**	○ 양식교부 : 2015.3.22(화) ~ 4.14(목) ○ 양식교부 및 접수안내 : - 산업기술지원 사이트 (itech.keit.re.kr)	○ 개념계획서 평가결과 통보 후 교부(통보 후 5일 이내)
☐ **인터넷 전산등록 및 신청서 제출**	○ 전산등록 : 2016.4.1(금) ~ 4.14(목) 18:00까지 ○ 신청서 접수 및 제출 : 2016.4.11(월) ~ 4.14(목) 18:00까지	○ 전산등록 : 2016.5.18(수) ~ 6.9(목) 18:00까지 ○ 신청서 접수 및 제출 : 2016.6.7(화) ~ 6.9(목) 18:00까지 * 개념계획서 평가결과 통보일에 따라 사업계획서 제출일이 변동될 수 있음
☐ **온라인 과제발굴 플랫폼 (산업기술지원 사이트 (itech.keit.re.kr)**	○ 개념계획서 평가 결과 통보받은 날 ~ 30일 이내(사업계획서 접수일) * 개념계획서 평가(4.18~5.2 예정)	-

※ 상기 일정은 사업추진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에 **인터넷 전산등록**을 통해 정보를 입력한 후 접수확인증을 출력하여 신청서(계획서 및 첨부서류)를 **우편 또는 인편으로 제출 (신청서 제출 마감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 우편물 표지에 과제번호, 지원분야, 주관기관, 신청과제명을 필히 기재

※ 인터넷 전산 접수 후 '접수확인증을 출력'하여 신청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 전산 등록처 : 산업기술지원 홈페이지(itech.keit.re.kr)

최미화 / 홍보담당관 / 2016-03-14 13:31:34

→ 온라인사업관리에서 과제접수(주관기관이 전산 등록)

※ 전산등록 시에는 주관기관의 총괄책임자가 로그인하여 전산등록(itech.keit.re.kr 회원가입 필요)

※ 전산등록 마감일에는 전산 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 요망. 또한, **전산접수 마감일 18시 이후 전산접수 불가**

○ 신청서 제출처 : (41069)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8길32(신서동)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혁신기업디자인팀 (☎ 053-718-8238)

※ 전산 등록기간에 등록을 완료(접수확인증 출력)하지 않은 과제의 경우는 신청서 접수가 불가함

※ 제출된 서류 및 사업계획서 등이 허위, 위·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 취소 및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8. 제출 서류 사항

① 개념계획서

서 류 명	원본/사본	부수	비고
전산접수증	원본	1부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에 인터넷 전산등록을 통해 정보를 입력한 후 접수확인증을 출력
개념계획서	원 본 / 사본	1부/ 9부	총10부
주관기관의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원본	1부	
주관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원본	1부	
과제책임자 및 실무 책임자의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원본	1부	
주관기관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주관기관 책임자의 재직증명서	원본	1부	
주관기관의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원 본 또는 사본 * 사본은 원본 대조필 날인	1부	비영리와 상장사(거래소·코스닥) 미제출, 그 외 기업은 제출(최근 2년 결산) ※ 가결산 재무제표 불가

최미화 / 홍보담당관 / 2016-03-14 13:31:34

② **사업계획서**(개념계획서 평가를 통과한 과제에 해당)

서 류 명	원본/사본	부수	비고
전산접수증	원본	1부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에 인터넷 전산등록을 통해 정보를 입력한 후 접수확인증을 출력
사업계획서	원 본 / 사본	1부/ 9부	총10부
우대 및 감점사항 증빙서류	사본	각 1부	
수행기관의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원본	각 1부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원본	각 1부	모든 신청 기관(기업) 한 장에 날인 또는 개별 낱장 제출
과제참여자의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원본	1부	작성은 2부 (1부는 보관 후 선정 시 사용)
(수행기관 중 중소기업만 해당)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 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원본	각 1부	작성은 2부 (1부는 보관 후 선정 시 사용)
수행기관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모든 기업 제출(비영리는 면제)
수행기관 책임자의 재직증명서	원본	각 1부	
수행기관의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원 본 또는 사본 * 사본은 원본 대조필 날인	1부	비영리와 상장사(거래소·코스닥) 미제출, 그 외 기업은 제출(최근 2년 결산) ※ 가결산 재무제표 불가 ※ 공고시 게시한 "수행기관 재무현황 작성(엑셀양식)" 제출 필수

※ 수행기관 :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모두에 해당

※ 과제참여자 : 총괄책임자 및 참여연구원 모두에 해당

9. 기타 유의 사항

□ 지식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장비, 연구시설 및 시작품 등 유형적 성과물은 주관기관의 소유로 함. 다만, 사업계획서에 따라 참여기관이 소유를 목적으로 취득한 유형적 성과물은 해당 수행기관의 소유로 함

○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보고서의 저작권, 연구노트 등 무형적 성과물은 개별 성과물을 연구개발한 기관의 단독 소유로 함. 다만, 복수의 수행기관이 공동으로 성과물을 개발한 경우 그 성과물은 공동으로 개발한 수행기관의 공동 소유로 하며, 단독 또는 공동소유의 판단은 사업계획서내용(추진방법, 편성도, 수행기관별 연구담당분야, 사업비 구성 등)을 근거로 성과물의 개발에 기여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함

○ 외국기관이 참여한 과제의 경우, 해당 기관이 사업의 수행결과로 발생하는 지식 재산권을 소유할 때에는 국내 수행기관에게 무상의 통상실시권을 부여하여야 함

□ 중소기업에 대한 IP 실시권 확산

○ 수행기관은 해당 과제를 통해 각자 개발한 성과물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동 과제의 다른 수행기관이 보유한 성과물을 실시할 수 있음. 이때, 성과물의 실시기간 및 조건에 대해서는 서로 합의하여 정함

○ 비영리기관은 참여기업 아닌 중소기업이 무형적 성과물에 대해 실시 허락을 요청한 경우 이에 응하여야함

- 다만, 중소기업인 실시기업에 대한 기술료율은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에 따른 기술료율 이내에서 서로 합의하여 정함

○ 기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37조 및 37조의2 참조

□ 보안등급 분류

○ 신청자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사업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 보안 과제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임

-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 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대외무역법」 제19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의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

최미화 / 홍보담당관 / 2016-03-14 13:31:34

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산업기술혁신평가단 신청

○ 신규과제로 선정된 경우, 협약체결 전까지 총괄책임자 및 참여기관 책임자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6조에 따른 산업기술혁신평가단에 신청하여야 함

□ 참여연구원의 최소 참여율

○ 총괄책임자를 포함한 모든 참여연구원의 최소 참여율은 20% 이상이어야 함

□ 신규평가시 여성연구원 관련 가점을 받은 경우 해당 가점 조건(여성 참여연구원 수, 비율 등)이 미 유지된 경우 전체 여성 참여연구원의 인건비(학생인건비 포함) 집행 금액 전액 불인정 함

10. 문의처 등

□ 사업설명회

○ 2016년도 국민안전증진기술개발사업에 대한 신규지원 방법, 절차안내 및 사업참여와 관련된 규정 등을 안내

○ 설명회 일정 : '16. 3. 17(목)

지역	일시	장소
서울	2016년 3월 17일(목) 14:00 ~ 17:00	서울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

※ 사업설명회를 위한 별도의 사전등록은 없습니다.

※ 주차비는 지원하지 않으므로 가급적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상세 내용 및 관련양식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www.keit.re.kr) 또는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참조

□ 상세 내용 및 평가 일정·절차에 대한 문의처(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사업계획서 전산 등록 관련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R&D상담콜센터(☎ 1544-6633)

○ 지원내용 '품목별 개념 및 범위' 내용 및 평가일정/절차에 대한 문의처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혁신기업디자인팀 (☎ 053-718-8238)

NOTICE
ISTRY OF
DE, INDUSTRY & ENERGY

최미화 / 홍보담당관 / 2016-03-14 13:31:34